

EU에코라벨에 관한 법적 분석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66/2010을 중심으로-

I. 서언

에코라벨(Ecolabel)이란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더 친환경적임을 정부 또는 기타 공인기관이 인증해 주는 표시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EU에코라벨은 해당 제품이 친환경적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임을 EU가 공인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EU에코라벨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66/2010은 2009년 11월 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채택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접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세계 경제와 공업을 주도해 온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개별 국가별 또는 지역공동체가 환경보호와 환경복구를 위해 여러 정책과 법안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산업과 환경의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EU도 환경의 영역을 매우 중요한 정책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공동체 역내시장(단일시장 또는 공동시장) 내에서 생산, 소비, 폐기되는 모든 제품군에 대해 부여하는 일종의 환경인증마크인 EU에코라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산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른바 EU에코라벨 규칙이다.

II. EU에코라벨 법제 분석

1. 규율 대상 및 범위

규칙 66/2010 제1조에 의하면 동 규칙은 EU 회원국들 내에서의 자율적인 EU에코라벨제도의 확립과 적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2조에 의하면 동 규칙은 유상 또는 무상 여

부를 불문하고 공동체 시장에 유통, 소비, 사용될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¹⁾

2. 용어 정의

동 규칙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① ‘제품군’이란 유사한 사용방법과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적 특징이 유사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일련의 제품들을 의미한다. ② ‘수행자(업자)’란 모든 생산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서비스공급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를 의미한다. ③ ‘환경적 영향’이란 제품이 사용되는 수명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④ ‘환경적 수행(수준)’이란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제조업자의 관리결과를 의미한다. ⑤ ‘인증(입증)’이란 어떤 제품이 EU에코라벨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²⁾

3. 관할기관

EU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 정부 부처 내외에 동 규칙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기관(관할기관)을 설립(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2개 이상의 관할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회원국은 기관들 상호 간의 권한배분 및 상호 협력과 존중에 관하여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³⁾ 그리고 이 관할기관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직무수행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절차상 규정되어야 한다.⁴⁾ 한편 EU 회원국은 관할기관이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하고,⁵⁾ 이 관할기관은 수행자(업자)가 검증을 받는 동안 그 입증절차가 지속적·중립적·독립적·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국제적, 유럽통합적 또는 국내적 기준과 관할기관이 수행하는 제품입증제도에 관한 절차를 기초로 진행되어야 한다.⁶⁾

4. EU에코라벨위원회

EU집행위원회는 동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



1) Regulation 66/2010(OJ 2010 L27/1), 제2조(1). 그러나 동 규칙은 인체대상 의약품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2001/83(2001.11.6-제정) 및 동물대상 의약품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2001/82(2001.11.6-제정)상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Regulation 66/2010, 제3조(1)~(5).

3) Regulation 66/2010, 제4조(1).

4) Regulation 66/2010, 제4조(2).

5) Regulation 66/2010, 제4조(3).

6) Regulation 66/2010, 제4조(4).

회원국의 관할기관의 대표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EU에코라벨위원회(EUEB)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위원장(대표)을 선출하며, EU에코라벨제도의 발전, 제도수행평가, 개선에 대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에 관련 분야에 한하여 조언과 보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환경수준 요구치에 대하여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⁷⁾

그리고 EU집행위원회는 EU에코라벨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제품군에 관하여 관할기관, 생산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서비스 제공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특히 중소기업,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관련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⁸⁾

5. EU에코라벨기준(규범)에 관한 일반적 요건

EU에코라벨기준(규범)은 환경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최선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제품의 환경적 수행(수준), 즉 환경보호의 노력에 기초해야 한다.⁹⁾ 그리고 EU에코라벨기준(규범)

은 EU에코라벨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환경적 요구치를 규정하여야 한다.¹⁰⁾

또한 EU에코라벨규범은 제품의 전체 수명을 감안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EU에코라벨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가장 중대한 환경적 영향,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에너지, 자원소비에 대한 영향, 모든 환경적 매체(토양, 물, 공기)에 대한 폐기물, 배출 가스, 물리적 영향에 따른 오염, 유해물질의 사용과 배출문제, ②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른 재료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을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 ③ 제품의 내구성 강화 및 재활용 가능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감소 가능성,¹¹⁾ ④ 제품의 전체 수명기간 동안의 환경적 이득과 부담 간의 환경적 균형(안전 및 보건의 영역 포함), ⑤ ILO기준이나 행위 준칙과 같은 관련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측면 및 윤리적 측면, ⑥ 국가적·지역적으로 공인된 기타 에코라벨에 관한 규범, 시너지 효과의 증대를 위한 특정 제품군에 관한 EN ISO 14024 type 1의 에코라벨, ⑦ 가능한 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성¹²⁾ 등이다.



7) Regulation 66/2010, 제5조(1).

8) Regulation 66/2010, 제5조(2).

9) Regulation 66/2010, 제6조(1).

10) Regulation 66/2010, 제6조(2).

11) 이를 통해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나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고자 하고 있다.

12) Regulation 66/2010, 제6조(3) (a)~(g).

그리고 EU에코라벨규범은 EU에코라벨을 부여 받은 상품들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¹³⁾

그리고 식품법에 관한 일반원칙과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EU의 식품안전기본법에 해당하는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178/2002에 규정된 식품과 사료에 관한 EU에코라벨규범의 수립, 유럽식약청 설립, 그리고 식품안전문제에 관한 절차법을 마련하기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 이내에 어업이나 수경농업을 포함하는 식품군 전반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경적 수준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식품과 사료뿐만 아니라 규칙 834/2007의 범위 내의 모든 비가공 농산물에 대하여 EU에코라벨규범이 미치는 영향에 유념해야 한다. 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농으로 분류가 된 상품만이 EU에코라벨을 부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¹⁴⁾ 그 다음 EU집행위원회는 본 조사결과 및 EU에코라벨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칙 66/2010 제16조(2)에 규정된 상세조사절차에 따라 어떤 식품

군 또는 사료군에 대해 EU에코라벨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¹⁵⁾

그런데 EU에코라벨은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정보기재 및 포장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1272/2008(2008.12.6-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및 유럽화학물질기구설립을 규정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1907/2006(2006.12.18-제정)에 따라 유해한 경우, 환경에 위험이 되는 경우, 발암성이 있는 경우, 돌연변이의 발생률을 높이는 경우 및 생산능력의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 등의 기준에 부합되는 물질이나 화합물을 포함하는 상품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제한).¹⁶⁾ 그리고 규칙 66/2010 제6조(6)에 규정된 물질이 포함된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하여 대안물질이나 설계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동일 범주의 상품들보다 총 환경적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높은 경우, EU집행위원회는 제6조의 부분적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규칙 1907/2006 제57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 및 제5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류된 물질인 경우 및 혼합물, 부합물, 또는 복잡한 부합물의 일부에 0.1% 농도 이상이 포함된 물질에는 이러한 부분적 폐지가 허용되



13) Regulation 66/2010, 제6조(4).

14) 한국 국민들도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품의 원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유기농이나 웰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정부의 친환경적 정책이 아닌 국민의 친환경적 의식의 성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5) Regulation 66/2010, 제6조(5).

16) Regulation 66/2010, 제6조(6).

지 아니한다. 규칙 66/2010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동 규칙 제 16조(2)에 규정된 상세조사(정밀조사)절차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¹⁷⁾

6. EU에코라벨규범의 개발 및 수정

EU집행위원회, 회원국, 관할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EU에코라벨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EU에코라벨규범에 대한 개발 또는 수정을 발의할 수 있다. 이 중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개발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립적이며 동 규칙의 목적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단체가 보다 우선적 순위를 갖게 된다.¹⁸⁾

이처럼 EU에코라벨규범에 대한 개발 또는 수정을 발의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I의 A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예비 보고서, ② 규범 초안 제안서, ③ 규범 초안 제안서를 위한 자문위원의 전문의견보고서, ④ 최종 보고서, ⑤ EU에코라벨의 잠재적 사용자들(수범자들) 및 관할기관을

위한 매뉴얼, ⑥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을 위한 매뉴얼(안내서) 등이다. 이와 같은 서류는 EU집행위원회와 EU에코라벨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¹⁹⁾

그런데 EU에코라벨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품군을 대상으로 EN ISO 14024 type I의 에코라벨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타 기준 계획하에서 개발된 경우, 타 기준 계획을 승인한 모든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와 EU에코라벨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에 그 기준 계획을 EU에코라벨 계획하에 개발할 것으로 제안(발의)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경우 부속서 I의 B에 규정된 약식 기준(규범) 개발 절차가 해당하는 제안된 기준이 부속서 I의 A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전제하에 적용된다. 이때 약식 기준(규범) 개발 절차는 해당 기준을 제안한 EU집행위원회나 개별 회원국이 주도해야 한다.²¹⁾

나아가 중대하지 아니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서 I의 C에 규정된 약식 수정 절차가 적용된다.²²⁾

2011년 2월 19일까지 EU에코라벨위원회와 EU집행위원회는 상품군의 목록과 집행계획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최종 사업안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사업안은 다른 공동체의 조치(예를 들



17) Regulation 66/2010, 제6조(7).

18) Regulation 66/2010, 제7조(1) para.1.

19) Regulation 66/2010, 제7조(1) para.2.

20) Regulation 66/2010, 제7조(2) para.1.

21) Regulation 66/2010, 제7조(2) para.2.

22) Regulation 66/2010, 제7조(3).

면, 공동 환경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환경 분야에 관한 공동체의 최신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갱신될 수 있다. 본 계획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²³⁾

7. EU에코라벨규범의 제정

EU에코라벨규범 초안은 부속서 I에 규정된 절차 및 사업안(계획안)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²⁴⁾ EU집행위원회는 EU에코라벨위원회에게 지문을 구한 지 9개월 이내에 각 상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EU에코라벨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EU의 관보(OJ)에 게재되어야 한다.²⁵⁾

한편 EU위원회는 최종제안단계에서 반드시 EU에코라벨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EU에코라벨위원회의 지문상의 규범 초안의 제안내용과 비교하여 최종제안에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그 변경이유를 입증하고 해명해야 한다.²⁶⁾ 본 규칙의 비본질적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는 추가 수정하여 동 규칙 제16조(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 도

입된다.²⁷⁾

규칙 66/2010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EU에코라벨규범에 따른 특정 제품의 부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건을 확립할 것(평가 요건의 확정), ② 각 제품군에 대해 부속서 II에 규정된 선택적 라벨로 표시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환경적 특성들을 구체화할 것, ③ 각 제품군에 대한 평가기준 및 EU에코라벨규범상의 유효기간을 정할 것, ④ ③에서 언급한 유효기간 동안에 인정될 수 있는 제품의 가변성 정도를 구체화할 것²⁸⁾

한편 EU에코라벨규범의 제정 시에는 그 시행 시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발생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²⁹⁾

8. EU에코라벨의 취득과 기간 및 활용

EU에코라벨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자는 동 규칙 제4조의 회원국 관할기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어떤 제품이 단일 회원국에서 출시(생산)되는 제품인 경우에 EU에코라벨의 신청은 당해 회원국의 관



23) Regulation 66/2010, 제7조(4).

24) Regulation 66/2010, 제8조(1).

25) Regulation 66/2010, 제8조(2) para.1.

26) Regulation 66/2010, 제8조(2) para.2.

27) Regulation 66/2010, 제8조(2) para.3.

28) Regulation 66/2010, 제8조(3).

29) Regulation 66/2010, 제8조(4).

할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② 어떤 제품이 복수의 회원국에서 동일한 형태로 출시(생산)되는 경우에 EU에코라벨의 신청은 해당 회원국들 중 한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어떤 제품이 공동체 외부에서 출시(생산)되는 경우에 EU에코라벨의 신청은 당해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거나 판매되어 왔던 회원국들 중 일국의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한다.³⁰⁾

EU에코라벨은 부속서 II에 표시된 형태를 가진다. EU에코라벨은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EU에코라벨규범에 부합하거나 EU에코라벨이 이미 부여된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취득)할 수 있다.³¹⁾

신청서에는 업자의 연락처 등 상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군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관할기관이 요청하는 여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제품은 EU집행위원회의 행정절차상 구체적으로 특정된 모든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³²⁾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기관은 부속서 III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EU에코라벨의 사용은 신청 수수료가 기한 내에 납부되었

다는 조건하에 그 사용이 가능하다.³³⁾

신청서가 접수된 지 2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신청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할기관은 신청업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³⁴⁾ 서류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해당 상품이 동 규칙 제8조에 따른 EU에코라벨 기준 및 평가 요건에 부합된다는 관할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은 해당 상품에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³⁵⁾ 업자들은 EU에코라벨 기준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한 테스트 및 평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 업자들은 관할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회원국 외부에서 현장검증(현지조사)이 필요한 경우에 그 출장경비(이동 및 숙박비용)를 부담할 수 있다.³⁶⁾

EU에코라벨규범이 생산시설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EU에코라벨이 부여된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시설은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은 현장검증(현지조사)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권한 있는 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³⁷⁾



30) Regulation 66/2010, 제9조(1).

31) Regulation 66/2010, 제9조(2).

32) Regulation 66/2010, 제9조(3).

33) Regulation 66/2010, 제9조(4).

34) Regulation 66/2010, 제9조(5) para.1.

35) Regulation 66/2010, 제9조(5) para.2.

36) Regulation 66/2010, 제9조(5) para.3.

37) Regulation 66/2010, 제9조(6).

관할기관들은 ISO 17025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검증된 사안이나 EN 45011 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검증된 사안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기관들은 특히 동 규칙 제13조에 명시된 실무진을 통해 평가 및 검증 절차의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³⁸⁾

관할기관은 EU에코라벨의 사용기한(특히 규범 또는 기준의 수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EU에코라벨의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을 포함하여 각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속서 IV에 있는 서식에 따라 표준형 계약서가 사용되어야 한다.³⁹⁾

업자는 관할기관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EU에코라벨을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또한 업자는 EU에코라벨을 부여받은 제품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⁴⁰⁾

제품에 EU에코라벨을 부여한 관할기관은 이를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대장은 EU

에코라벨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⁴¹⁾

EU에코라벨은 EU에코라벨이 부여된 상품 및 그 상품과 관련된 홍보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⁴²⁾

EU에코라벨의 부여는 공동체법 또는 국내법의 환경 및 기타규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⁴³⁾

EU에코라벨의 사용 권리는 EU에코라벨을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지 아니한다.⁴⁴⁾

9. 시장 감독 및 EU에코라벨사용의 규제(제한)

EU에코라벨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허위나 과장된 광고 또는 라벨, 그리고 상표의 사용은 금지된다.⁴⁵⁾

관할기관은 EU에코라벨을 부여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이 동 규칙 제8조에 규정된 EU에코라벨의 기준 및 평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관할기관은 필요한 경우 민원에 따른 불만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여 검증하는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검증은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의 형식



- 38) Regulation 66/2010, 제9조(7).
- 39) Regulation 66/2010, 제9조(8).
- 40) Regulation 66/2010, 제9조(9).
- 41) Regulation 66/2010, 제9조(10).
- 42) Regulation 66/2010, 제9조(11).
- 43) Regulation 66/2010, 제9조(12).
- 44) Regulation 66/2010, 제9조(13).
- 45) Regulation 66/2010, 제10조(1).

을 취할 수 있다.⁴⁶⁾ 이 경우 당해 제품에 EU에코라벨을 부여한 관할기관은 문제가 된 EU에코라벨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당해 사용자에게 문제가 된 불만사항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기관은 민원요청자의 신분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⁴⁷⁾

EU에코라벨 사용자는 자신의 제품에 EU에코라벨을 부여한 관할기관이 해당 제품이 관련 제품군에 관한 규범과 제9조상의 지속적인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사과정을 수행하도록 관할기관에 협조해야 한다.⁴⁸⁾

EU에코라벨 사용자는 제품에 EU에코라벨을 부여한 관할기관의 요청 시, 해당 제품이 생산되는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합리적인 시기라면 어느 시점에라도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도 가능하다.⁴⁹⁾

EU에코라벨 사용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 후, EU에코라벨이 부여된 제품이 해당 제품군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거나 EU에코라벨이 제9조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관할기관은 해당 제품이 EU에코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EU에

코라벨이 다른 관할기관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그 해당 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EU에코라벨 사용자는 제9조(4)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⁵⁰⁾ 관할기관은 다른 모든 관할기관과 EU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용 금지 처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⁵¹⁾

제품에 EU에코라벨을 부여한 관할기관은 EU에코라벨의 부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자가 제9조에 규정된 EU에코라벨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⁵²⁾ 관할기관은 이러한 조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위조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³⁾

10. 회원국 내에서의 에코라벨제도

해당 제품군에 대한 EU에코라벨 기준이 공표된 경우, 공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제품군을 규율하지 아니하던 기타 국내공인 또는 지역



46) Regulation 66/2010, 제10조(2) para.1.

47) Regulation 66/2010, 제10조(2) para.2.

48) Regulation 66/2010, 제10조(3).

49) Regulation 66/2010, 제10조(4).

50) Regulation 66/2010, 제10조(5) para.1.

51) Regulation 66/2010, 제10조(5) para.2.

52) Regulation 66/2010, 제10조(6) para.1.

53) Regulation 66/2010, 제10조(6) para.2.

적 공인 EN ISO type I 에코라벨제도는 그 제도 하에서 형성되었던 기준이 EU에코라벨 기준에 준할 때에 한하여 그 제품군을 규율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⁵⁴⁾ EU에코라벨 체계 (EN ISO type I)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EU에코라벨규범은 기존에 회원국에 의해 공인된 현존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⁵⁵⁾

11. EU에코라벨의 홍보 및 장려

회원국들과 EU집행위원회는 EU에코라벨위원회의 협조하에 다음의 내용에 따라 EU에코라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① 소비자, 생산자, 제조업자, 도매업자, 서비스 공급자, 정부구매자, 무역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EU에코라벨을 알리기 위한 조치나 정보제공, 그리고 공공캠페인(공익광고), ②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⁵⁶⁾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본 규범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U에코라벨의 장려는 공동체의 모든 언어로 EU에코라벨에 대한 기본적 정보와 자료(홍보

물) 및 EU에코라벨 부착 제품 구매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U에코라벨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⁵⁷⁾

회원국들은 부속서 I-A-5에 규정된 ‘정부계약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지침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일례로 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⁵⁸⁾

12. 정보 및 경험의 교류(교환)

본 규칙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관할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여야 하며, 특히 제9조와 제10조의 시행 등에 있어서 이에 따라야 한다.⁵⁹⁾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기관들로 이루어진 실무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실무진은 1년에 최소 2회 이상 회합하여야 하고, 출장 경비는 EU집행위원회의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 실무진은 자체 위원장을 선출하고 직무에 관한 절차법을 제정한다.⁶⁰⁾



54) Regulation 66/2010, 제11조(1).

55) Regulation 66/2010, 제11조(2).

56) Regulation 66/2010, 제12조(1).

57) Regulation 66/2010, 제12조(2).

58) Regulation 66/2010, 제12조(3).

59) Regulation 66/2010, 제13조(1).

60) Regulation 66/2010, 제13조(2).

13. 보고

2015년 2월 19일까지 EU집행위원회는 EU에 코라벨제도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EU에 코라벨규범에 관한 평가가 적시되어야 한다.⁶¹⁾

14. 부속서의 수정

EU집행위원회는 EU에 코라벨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속서 III에 규정된 수수료의 상한선을 변경하는 등 부속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본 규칙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진 위의 조치는 제16조(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⁶²⁾

15. 자문위원회 절차

EU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보조를 받는다.⁶³⁾

16. 벌칙

회원국들은 본 규칙 위반 시의 벌칙(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시행의 보장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정될 벌칙의 내용은 효과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개선의 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벌칙의 내용과 그 효과에 관하여도 지체 없이 EU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⁶⁴⁾

17. 폐지

이로써 규칙 1980/2000은 폐지된다.⁶⁵⁾

18. 과도 규정(경과 규정)

규칙 1980/2000은 제9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에 명시된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제외된다. 본 규칙 제9조(4)와 부속서 III은 위의 계약에 준용된다.⁶⁶⁾



61) Regulation 66/2010, 제14조.

62) Regulation 66/2010, 제15조.

63) Regulation 66/2010, 제16조.

64) Regulation 66/2010, 제17조.

65) Regulation 66/2010, 제18조. EU는 규칙 1980/2000을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계획할 수 있었고, 이로써 EU에 코라벨이 수정될 필요에 따라 개정되었던 것이다. 즉 보다 고차원적인 친환경정책의 수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EU에 코라벨 사용의 적용영역의 확대와 관련해서 식품과 사료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가공 농산물만이 유기농제품으로 인정되어 EU에 코라벨 사용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6) Regulation 66/2010, 제19조.

19. 발효

본 규칙은 EU 공보 게재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규칙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Ⅲ.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규칙은 EU 외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EU에코라벨의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 EU 통상무역에 있어서 EU에코라벨제도는 정책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녹색성장이 부각되는 현 국제사회와 2011년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 시대에는 양 당사자 간 상품 교역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의 향방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상무역에 앞서 한국은 산업과 환경의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환경보다는 산업육성정책이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배려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코라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가절차와 증명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에코라벨규범을 준수하는 업자에게는 에코라벨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본 제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에코라벨은 친환경적, 자원절약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시장지향적인 환경정책의 수

단이므로, 시장에서의 녹색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에코라벨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 두 수

(해외법제조사위원/EU, 법학박사)